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January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KPMG report: '디지털세 필라 1' 다자협약 안에 대한 서면 공청회](#)

지난 2022 년 12 월 20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라 1 Amount A: 디지털세에 대한 다자협약안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 사례]** 에 대한 서면 공청회를 개시했습니다.

필라 1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도입 시 각 조세관할권에서 금지해야 하는 단독 과세 조치 사례, 즉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현행 디지털서비스세와 이와 유사한 과세 조치 사항에 대한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다자협약안과 관련된 두 가지 Article (Article 37 및 38)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Article 내에는 현재 시행 중인 단독 과세 조치를 금지하고,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단독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조치 사항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계속해서 시행하는 국가는 Amount A 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OECD 사무국이 발표한 자료 내에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이하 "IF")의 최종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2023년 1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수취하여 다자간 협약에 대한 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현행 과세 조치사항의 금지

각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단독 과세 조치를 금지하기 위해 명확한 체계를 제시할 예정이며, IF의 최종 검토 이후 금지 예정인 내용들은 다자협약안의 부록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각국의 단독 과세 조치 사항은 최소 2024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나, 명확한 시점은 추후 IF 동의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다자간 협약 체결 미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과 같이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종적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IF는 계속해서 현행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을 촉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향후 도입 예정인 과세 조치 사항

제 38 조는 국가가 (i)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유사한 과세 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ii) 현행 단독 과세 조치 사항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액인 Amount A를 해당 시장소지국에 배부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38 조는 조세조약 내에 포함되지 않는 세제 등을 단독 과세 조치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다자협약에 따라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buse rule)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다자간협약 협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즉 다자간 협약 체결국의 대표들은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조치의 범위를 향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OECD Pillar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

지난 2022년 12월 8일 G20 및 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Pillar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illar 1의 Amount B는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하여 과세당국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금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 성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추가적으로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Pillar 1의 Amount B와 관련한 공개안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Amount B 개요 및 적용대상

Amount 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Marketing and Distribution, "M&D")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표준화된 이전가격 체계를 의미합니다. Amount B 적용대상은 농산물 등 원재료 및 무형상품을 제외한 ①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②신용위험 등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③현지 재판매업자입니다. 해당 적용대상기업은 재무제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양적 및 질적 기준 평가를 통하여 기본 M&D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제시된 양적 및 질적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능: 도매업이 아닌 부수적 활동의 비율이 총매출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자산: 상표권 등 주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것
- 위험: 시장위험 등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할 것
- 과세당국과의 협의: 양자 및 다자간 사전승인제도(APA) 대상인 경우 Amount B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가격산정방법

Amount B와 관련된 정상가격산정은 하기 단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1. 기본 M&D 활동을 수행하는 전체 기업들을 식별
2. 산업 및 지역간 차이 등을 반영해 비교대상기업들을 선정
3. 동 기업들의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 도출

정상가격산정 시 영업자산 등 기업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 및 지역 관련 이익변인의 영향을 정량화해야하며, 수익률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존 이전가격세제 상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적합한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하거나 거래순이익률법이 아닌 비교가능제 3자가격 방법 등 다른 이전가격 방법이 더 적절한 경우 해당 이전가격 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신용도 등 검토대상거래와 비교대상거래 간 중대한 차이의 영향을 제거하는 비교가능성 조정(comparability adjustment)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행방안

Amount B 채택국은 입법화 혹은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세제 시행방식에 따라 Amount B를 도입할 전망이며, 기존 Amount B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이 유통구조 조정 등을 통해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고, 적용대상인 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Amount B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Amount B 집행을 위하여 개별기업보고서에 고객 유형별 거래내역 및 관련 기업 기능분석, Amount B 가격산출 방법 설명, 납세자 재무정보, 사업구조조정 등 경과규정 적용에 관한 설명자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조세확실성

납세자는 사전승인제도 등 절차를 신청하여 Amount B 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호합의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 과세당국 간 합의 실패 시 조세조약 상 중재(arbitration)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보고서 초안 공개

2022 년 12 월 20 일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 공청회 기간: ('22.12.20 ~ '23.2.3 일)를 개시했습니다.

이행 단계로 들어간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패키지로 하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① 세이프하버 가이드스

○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조치(국가간 既 합의사항)

구분	내용 설명
전환기 세이프하버	· 기업이 매년 제출중인 '국가별 보고서' 상 매출액·세전이익 등 수치를 토대로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제도시행 초기 몇 년간만 적용 허용)
영구적 세이프하버	·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기반으로 '간소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매출액·세전이익 등 수치를 토대로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제도시행 이후 항구적 적용)
전환기 패널티 면제	·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몇 년간 기업이 아래 'ii)의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시 오류를 범하더라도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하기로 함

② 표준 신고서식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실효세율 계산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고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공통의 신고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설명,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계산된 추가세액 할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

③ 조세확실성 절차

○ 필라2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국가간 해석 및 적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 (분쟁 예방) 다자간 협의체계 등을 통해 일관된 해석을 촉진하고, 기존 이전가격사전합의제 등을 활용해 과세당국간 사전합의 유도

- (분쟁 해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한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다자협약 개발 등 검토

최종 합의한 세이프하버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수렴안은 아직 논의중으로,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헝가리: 법인세 신고 시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신고 지침

2022년 12월 9일 헝가리 재무부는 법인세 신고시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시행안 규정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별 또는 통합거래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 작성 내용에는 가장 적절한 헝가리 산업분류 통합코드(TEÁOR 코드), 거래 성격, 거래 금액,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및 정상가격 범위가 포함되어야 함
-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 이후 적용

또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는 다음의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 대상 거래의 기준은 5천만 HUF(약 1억 7천만 원) 에서 1억 HUF(약 3억 3천만 원)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전가격보고서 또는 통합기업보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 주요 정보 누락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거래별 5 백만 HUF(약 1 천 7 백만 원)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 배부방법 또는 배부기준 등 종전 대비 세부적인 그룹 내부 용역거래 가격 산정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 스위스: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스위스 연방의회의 개헌안 통과

스위스 연방의회는 OECD 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Pillar Two 모델 규정 도입을 위해 스위스 연방위원회(Swiss Federal Council)가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의회의 법안 통과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협정에 따라 2024 년까지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Next step**

2023 년 6 월 본 개헌 건에 대한 공식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 통과 시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2024 년 1 월 1 일부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 년 8 월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정식 개헌 이전 일시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본 개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



## 02 관세

### 2023 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_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 35 조)

- (개정 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과거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었으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
- (개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202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신규대조표]

변경 전 부가가치세법 제 35 조(수입세금계산서)	변경 후 부가가치세법 제 35 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 3 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 270 조(제 271 조제 2 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 270 조의 2 또는 제 276 조를 위반하여 <b>고발</b> 되거나 같은 법 제 311 조에 따라 <b>통고처분</b> 을 받은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나. 「관세법」 <b>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부정행위</b>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단서에 따른 <b>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b> 한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b>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b> 이 있는 경우
<신 설>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KPMG 의견]**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관세 조사 시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칙적인 공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아래의 제한적 사유의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됨.

- (1)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 등에 따른 고발 및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
- (2) 부정행위에 따른 중가산세 부과받을 경우
- (3)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고지받은 오류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향후 관세심사에서 주요 심사 Point 중 하나는 납세의무자의 추정 사유가 상기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됨.

발급 제한 사유 중 (3)번의 경우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고지받은 오류의 반복**”에 해당하는 **추가 납부 부가세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세관은 과거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에 기술된 오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부가세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함.

이에 따라, 달라지는 2023년 관세행정 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관세 진단 등을 통해 현존하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해당 리스크가 과거 심사 시 이슈가 된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 권장됨.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